

2007.08.03. (금)
제1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서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운영팀)

자치행정위원회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7. 18.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7. 19.
다. 상 정 일 자 : 2007. 7. 23.(제1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가. 제안사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안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지방자치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 안 제 23조(실비보상 등)을 살펴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실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애매 모호한 설정임

○ 현재 우리시에서는 급량비 및 일비로 1인당 월 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지난 연말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토의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박성하 의원)

○ 조례가 가결되어 시행될 경우 현재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참석수당의 상향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음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박성하 의원)

○ 일부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정액 운영비로 25인이내의 정수를 감안하여 2만원의 예산내 금액인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적정한 방법이라 생각 하는데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강현삼 의원)

나. 답변요지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 개정 이유는 의원님들의 말씀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의한 사항이며, 참석위원님들의 식대비로만 지출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좋은 정책제안은 시정에 반영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예, 단서조항에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2만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